[서식 예]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점유회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

별지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은 소외 김◈◈의 소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 ○. ○. 소외 김◈◈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건물에서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습니다.

상가의 소유자인 소외 이●●로부터 그 소유 상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 있던 비디오테이프, 선반 등의 비품을 모두 그 곳으로 옮긴 다음, 소외 김물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두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야시 대한법률구조공E

2. 소외 강◆◆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침탈

소외 강◆◆은 소외 김◈◈의 동서로서, 이 사건 건물 등 소외 김◈◈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 ○. ○.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채워 둔 자물쇠를 강제로 따고 들어간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분식점을 경영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습니다. 즉, 소외 강◆◆는 원고의 계속된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라할 것입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점유침탈의 특별승계

소외 강◆◆는 분식점의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던 중 평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를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잠적하였고, 피고는 여기에서 오락실을 차려 운영하였습니다. 즉, 피고와 소외 강◆◆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침탈자인 소외 강◆◆는 피고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점유침탈에 대한 악의

피고는 소외 강◆◆와는 둘도 없는 동네 친구이고, 피고의 주거는 이 사건 건물과는 50m도 떨어지지 않아, 피고는 소외 강◆◆의 이 사건 점유침탈사실을 보아서 알고 있었고, 또한 소외 강◆◆도 피고에게 점유침탈사실을 알리고 떠났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강◆◆의 점유침탈에 대한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고, 소외 강◆◆는 원고의 점유에 대한 침탈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점유침탈자인 소외 강◆◆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민법제20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m²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단층 상가 ○○m². 끝.

그 첫 H O	w al all/1) = 1 = 7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www
관 할 법 원	※ 아래(1)참조	제 척 기 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함께 라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수수 1 대한법률구조공단

-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 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척기간

- 1. 점유의 회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민법 제 204조 제3항).
- 2.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등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